

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위원회 규정

- 제정 : 2008. 3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3. 10. 2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

1.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에 대한 제반사항
2.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 보고서의 내용
3. 기타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·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3-0-20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위원회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